

6차시

# 핵심만 쏙쏙! 기업법무실무

## 채권회수 및 도산

변호사 / 공인회계사 이은종

# Contents

**1 채권회수절차**

**2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

# Contents

## 1 채권 회수 절차에 관한 이해

1. 절차 개관
2. 보전처분
3. 집행권원의 획득
4. 강제집행

# 1. 채권 회수 절차에 관한 이해

## 1. 절차 개관

### Overview

채권의 회수는 보전처분, 집행 권원의 획득 및 집행절차를 거쳐 이루어 짐

####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의 회수 절차 시작 전 미리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 보전처분 절차에서 채권 회수되는 경우도 많음

#### 집행 권원의 획득

-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주는 권원(채무명의)
- 정식재판을 통한 판결문, 독촉절차를 통한 지급명령문

#### 강제집행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추심 등으로 채권 회수
-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경우

# 1. 채권 회수 절차에 관한 이해

## 2. 보전처분

### 보전처분의 유용성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방지하는 수단

| 가압류  | 가처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예금, 급여채권 등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것</li><li>• 담보제공 필요함</li><li>• 압류금지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도 금지됨</li><li>•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li><li>•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li></ul> |

# 1. 채권 회수 절차에 관한 이해

## 3. 집행권원의 획득

### 집행권원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정의 증서

#### 지급명령

-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인정
- 간편성, 신속성

#### 정식재판

- 정식으로 소제기하여 확정판결문 받음

#### 기타 집행권원

- 소송상 화해조서와 제소전 화해조서
- 인낙조서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조정절차

# 1. 채권 회수 절차에 관한 이해

## 4. 강제집행

### 강제집행 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만족을 현실로 주는 절차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예금채권, 급여채권 등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추심 또는 전부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전제품, 가구 등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현금화, 배당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건물, 토지 등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현금화, 배당

# 1. 채권 회수 절차에 관한 이해

## 4. 강제집행

### 강제집행 보조 절차

강제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 재산명시

-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자산상태를 공개
- 감치처분, 벌금

#### 채무불이행자 명부

-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재한 후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
-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

#### 재산조회

-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

# Contents

## 2 **도산제도 개관**

1. 법인파산 /개인파산
2. 주식회사의 이해 관계자
3. 주식회사 정리절차에서의 Risk

# 2. 도산제도 개관

## 1. 법인파산 / 개인파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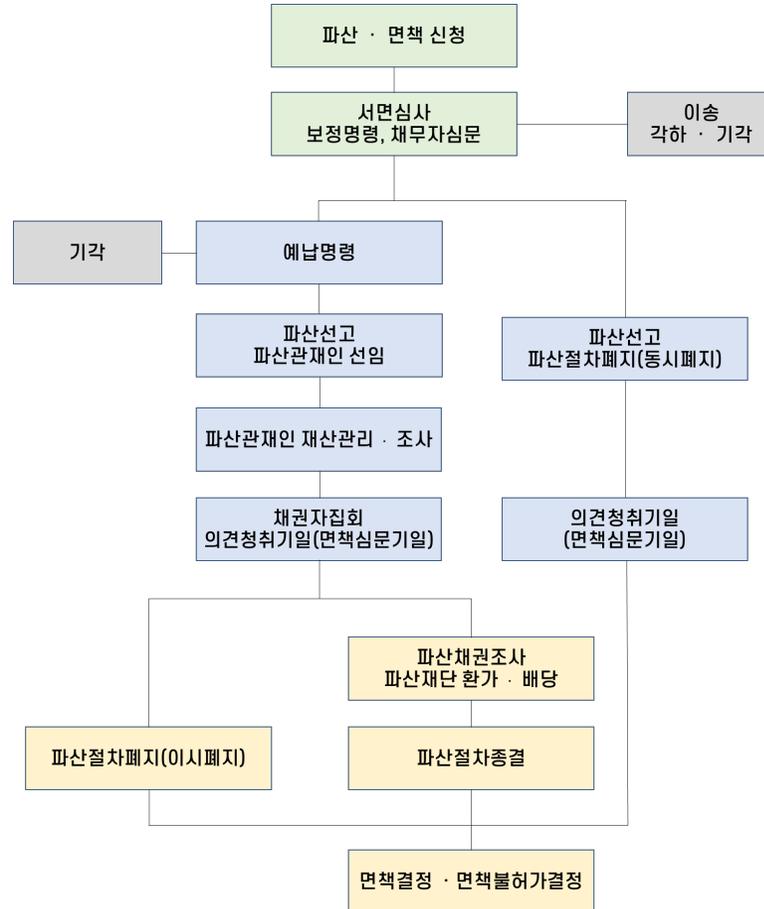
### ■ 법인파산 절차의 개요



# 2. 도산제도 개관

## 1. 법인파산 / 개인파산

### 개인파산 절차의 개요



# 2. 도산제도 개관

## 1. 법인파산 / 개인파산

### 파산의 원인, 기각사유 및 파산선고의 효력

#### 파산의 원인

- 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법인의 파산원인 :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 파산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 파산선고의 효력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및 권리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
-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그 사실을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2. 도산제도 개관

## 1. 법인파산 / 개인파산

### ■ 면책 신청 기각 사유 및 면책 불허가 사유

#### 면책 신청 기각 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면책 불허가 사유

(다음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허가하여야 함)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파산증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이전에 면책을 받았던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과도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 때

# 2. 도산제도 개관

## 1. 법인파산 / 개인파산

### ■ 파산채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음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파산채권 신고가 필요함

# 2. 도산제도 개관

## 1. 법인파산 / 개인파산

### ■ 재단채권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함**

-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2. 도산제도 개관

## 1. 법인파산 / 개인파산

### ■ 재단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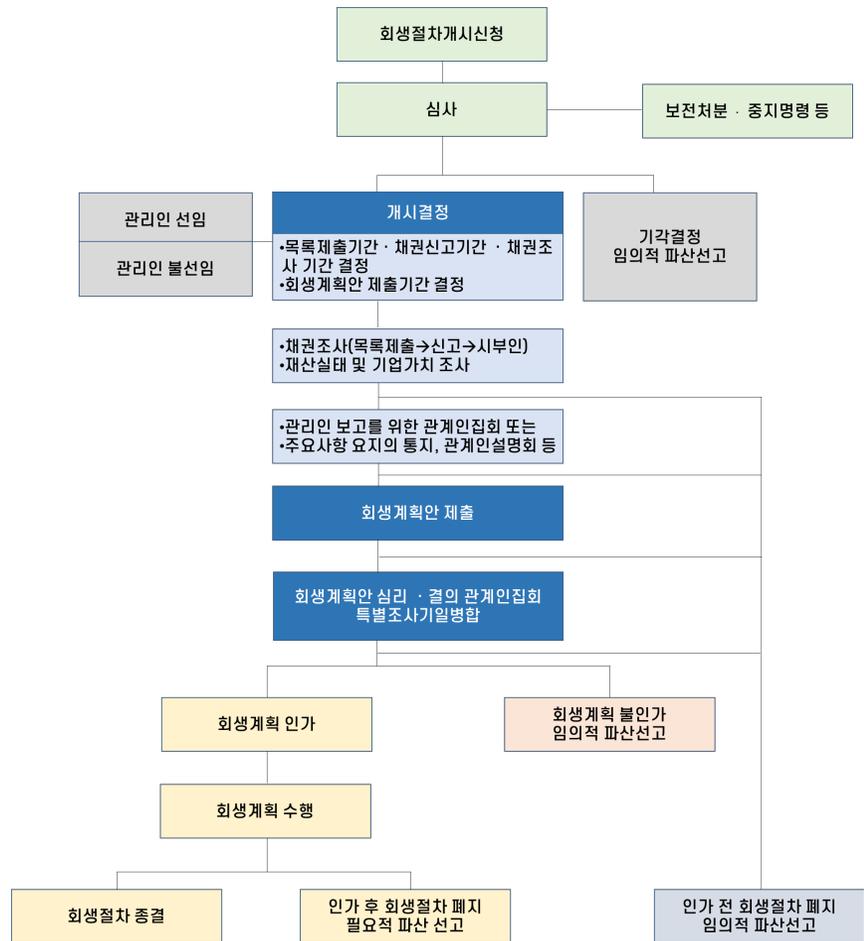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함**

-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 제335조제1항의 규정(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2. 도산제도 개관

##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 회생 절차의 개요



# 2. 도산제도 개관

##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 개인회생 절차의 개요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 채무총액 :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변제기간 :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치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함



# 2. 도산제도 개관

##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 생계비 기준액

#### 생계비 기준액

- 매월 변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기준(월 변제액 = 매월 수입 - 생계비)
- 가계 중위소득의 60%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음
- 2021년 현재의 생계비 기준액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2. 도산제도 개관

##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

# 2. 도산제도 개관

##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 공인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함**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 2. 도산제도 개관

##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 공인채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2. 도산제도 개관

##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 공인채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2. 도산제도 개관

##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 ■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채권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 2. 도산제도 개관

##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함

-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등.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6차시

# 핵심만 쏙쏙! 기업법무실무

## 채권회수 및 도산

감사합니다